#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7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위성곤·박해철·김 현

임광현 · 권향엽 · 박민규

박홍배 · 강준현 · 위성락

문대림 · 송재봉 · 김태년

한병도 · 김성회 · 박정현

이광희 • 이상식 • 한민수

김용만 · 정일영 · 이용선

염태영 • 안도걸 • 박용갑

전진숙 · 장종태 · 문금주

오기형 • 양부남 • 정진욱

백승아 · 이해식 · 김영환

이연희 의원(3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국가기관"을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를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주무부장관관에 대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고의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 제목 "(국회모욕의 죄)"를 "(국회모욕의 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누구든지 고의로 이 법에 따라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 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개 정 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 에 대한 조치요구) ------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 ----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 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 ----- 감사원 또는 주무부 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 요구하거나, 주무부장관에 대하 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여 ----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u>나 국정조사 또는</u>청문회 등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 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

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 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 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 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 | 을 회피한 증인, 고의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절한 자, 선 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 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국회모욕의 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등 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누구든지 고의로 이 법에 따 라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 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 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